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20년 11월 13일

신한BNPP삼성전자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

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 투자대상자산 정의 및 투자비율 변경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투자대상자산 정의 및 투자비율 변경: 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	<p>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) &lt;삭제&gt; 및 <b>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국채, 통안채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)</b>(이하 "채권" 이라 한다)</p> <p>2.~4. &lt;생략&gt;</p> <p>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이하 같다)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&lt;삭제&gt;(다만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, <b>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</b>)(이하 " 집합투자증권 등" 이라 한다)</p> <p>&lt;이하생략&gt;</p>	<p>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) (이하 "채권" 이라 한다)</p> <p>2.~4. &lt;생략&gt;</p> <p>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이하 같다)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 집합투자증권 등" 이라 한다)</p> <p>&lt;이하생략&gt;</p>
1. 투자대상자산 정의 및 투자비율 변경: 제15조 (투자대상자산 등)	<p>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8. &lt;생략&gt;</p> <p><b>9. &lt;신설&gt;</b></p>	<p>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8. &lt;생략&gt;</p> <p><b>9.상기 2호 및 5호의 투자비율을 합산하여,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</b></p>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투자대상자산 정의 및 투자비율 변경
-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-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투자대상자산 정의 및 투자비율 변경: 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p>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가. 투자대상</p> <p>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) &lt;삭제&gt; 및 <b>채권관련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국채, 통안채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)</b>(이하 "채권" 이라 한다)</p> <p>2.~4. &lt;생략&gt;</p> <p>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이하 같다)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&lt;삭제&gt;(다만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, <b>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</b>)(이하 " 집합투자증권 등" 이라 한다)</p> <p>&lt;이하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가. 투자대상</p> <p>1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) (이하 "채권" 이라 한다)</p> <p>2.~4. &lt;생략&gt;</p> <p>5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이하 같다)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" 집합투자증권 등" 이라 한다)</p> <p>&lt;이하생략&gt;</p> <p><b>다만,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율을 합산하여,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</b></p>

<b>2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b>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0년10월 31일)</b>
<b>3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b>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-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20년10월 31일)</b>

**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**

(1) 기재사항 변경

1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b>1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: 운용전문인력</b>	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20년 10월 31일)</b>

